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 - 88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0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법제처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 일부 개정

2. 주요내용

가.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에 따른 정비권고

- 제8조(소집) : 소집불응시 불이익 조항 삭제 등(안 제1항, 안 제3항)
- 제10조(금지행위) :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금지행위 삭제
- 제12조(교육) : 의무교육시간 규정 삭제(안 제2항, 안 제3항)

나.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8. 9. 07. ~ 2018. 9. 27. (의견제출 없음)

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
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8.10.11.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제61조,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단원이 호선하여,”를 “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단원이 호선하며,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부단장은”을 “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자는 별지 제1호 서식”을 “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“마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중 “방재단원은”을 “단원은”으로, “방재단장”을 “단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 중 “방재단원”을 “단원”으로, “참석에 과반수”를 “이상이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”로, “자”를 “사람으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에”로 한다.

제5조제2호 본문 중 “마포구외”를 “마포구 외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방재단장을”을 “단장을”로, “방재단장이”를 “단장이”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협의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단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제4항 중 “발생시”를 “발생 시”로, “등에 대하여”를 “등을”로, “지원범위, 시기,”를 “지원범위와 시기 및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”를 “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방재단관리시스템, 전화 또는 가능”을 “전화 또는 그 밖에 가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별지 제2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3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3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4호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4호 서식”을 “8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구의”를 “마포구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교육·훈련에”를 “교육비·여비 등 교육·훈련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재난지역”을 “사전예찰 활동 및 재난지역”으로 한다. 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별지 제5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6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청장은 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제1항 단서 중 “효율성 제고를”을 “효율성을 높이기”로, “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”을 “구청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이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당해년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, 같은 서식(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)의 “상기”를 “위”로 한다.

별지 제1-1호 서식을 별지 제2-1호서식으로 하고, 같은 서식(종전의 별지 제1-1호 서식)의 “[별지 제1-2호 서식]”을 “[별지 제2-2호서식]”으로, “상기 본”를 “위”로 한다.

별지 제1-2호 서식을 별지 제2-2호서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, 같은 서식(종전의 별지 제2호 서식)의 “서식1의 등록번호”를 “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”로, “○○면(군)”을 “○○동”으로, “○○읍(면동)”을 “○○동”으로, “읍면동”을 “동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, 같은 서식(종전의 별지 제3호 서식)의 “[별지 제1호 서식]”을 “[별지 제2호서식]”으로, “[별지 제1-1호 서식]”을 “[별지 제2-1호서식]”으로, “[별지 제1-2호 서식]”을 “[별지 제2-2호서식]”으로, “[별지 제2호 서식]”을 “[별지 제3호서식]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, 같은 서식(종전의 별지 제5호 서식)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임명장

주소
성명

귀하를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장
으로 임명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[별지 제6호서식]

출 입 증

출 입 증	
사 진 (3×4cm)	
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	

← 5.5cm →

지역자율방재단원증	
NO. 000	혈액형 O(RH+)형
성 명 : ○ ○ ○	
생년월일 : . . ()	
소 속 :	
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※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	
년 월 일	
마포구청장 (인)	
바탕 배경에 마포구 상징(휘장) 삽입	

↑

7.

7

cm

↓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60조, 제62조, 제6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제61조,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조직) ① (생략) ② 단장은 단원이 호선하여,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한다.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. ④ 간사는 단원 중에서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.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,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,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,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제3조(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단원이 호선하며,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--.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--. <삭 제> ⑤ ----- ----- ----- ----- 사 람은 별지 제2호서식----- -----.

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·단체·기업체·기관·학교·종교단체·동호회 등으로 한다. 단,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.

⑨ 동 방재단원은 마포구 지역
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마포구 방
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.

⑩ 동 방재단의 대표는(이하 “동 대표”라 한다) 해당 동 방재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.

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해임) 단원 등이 다음과 같

⑦ ----- 서울특별시
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
한다)-----

⑨ -- 단원은 -----
----- 단
장-----.

⑩ -----
----- 단위
----- 이상이 참석하
여 과반수 이상의 -- 사람으--.

③ -----

----- 경우에 -----
-----.

제5조(해임) -----

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
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
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단원이 마포구외 지역으로
이주한 경우. 다만, 활동하는
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
러하지 아니하다.

3. ~ 5. (생략)

제6조(지역자율방재협의회) ①
(생략)

② 협의회는 방재단장을 포함하
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
하되, 방재단장이 회장이 되고
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
표, 동 대표, 방재전문가와 단장
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
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
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
집할 수 있다.

④·⑤ (생략)

제7조(임무) ① ~ ③ (생략)

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마포구 외 -----
-----.
-----.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지역자율방재협의회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단장을 -----

--- 단장이 -----

----- 사람 -----
-----.

③ 협의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경우와 회원 3분의 1
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단장
이 소집할 수 있다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임무) ① ~ ③ (현행과 같
음)

④ ----- 발생

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범위, 시기,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.

제8조(소집)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소집방법은 방재단관리시스템,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.

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. 다만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 등)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“단원 활동현황 총괄표”를

시-----등을 -----지원범위와 시기 및 -----.

제8조(소집) ①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, -----.

② -----전화 또는 그 밖에 가능-----.

<삭 제>

제9조(운영 등) ① -----

---- 별지 제3호서식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별지 제4호서식-----

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생략)

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.

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4. 단원의 교육·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훈련에 소요되는 비용

5. (생략)

6. 재난지역의 현장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

7. (생략)

⑨ (생략)

제10조(금지행위) 단장 및 단원은
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8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-----
-----.

⑦ -----

---- 마포구의 -----
--.

⑧ ----- 범위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----- 교육비·여비 등 교육·훈련에 --

5. (현행과 같음)

6. 사전예찰 활동 및 재난지역-

7. (현행과 같음)

⑨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
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
목적으로 하는 행위
2.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3.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
에 참여하는 행위
4.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
제11조(출입증 발급) ① (생략)

② 출입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.

제12조(교육)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,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

제11조(출입증 발급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 별지 제6호서식-----.

제12조(교육) ① 구청장은 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 ----- 효율성을 높이기 ----- 구청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이를 --.

<삭 제>

<삭 제>

시간 이상 전문기관(민간기관 포함)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 단,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“민방위교육 추진지침”에 따른다.

④ -----

----- . ----- 해
당 연도 -----
-----.

<신 설>

[별지 제1호서식]

임명장

주소
성명

귀하를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
임명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[별지 제1호 서식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<개인>

등록번호 : _____

성명	○○○(성별)	연령		혈액형	
주소			일반전화		
			휴대전화		
자격증 또는 기능		운전가능 여부 (면허종류)			
재난 현장경험	※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) ○○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, 이재민 구호, 차량통제, 인명구조, 장비지원.....등 구체적으로 정리				
희망 활동내용	※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				
[특이사항] ※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					

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가입희망자 ○ ○ ○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<개인>

등록번호 : _____

성명	○○○(성별)	연령		혈액형	
주소			일반전화		
			휴대전화		
자격증 또는 기능		운전가능 여부 (면허종류)			
재난 현장경험	※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) ○○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, 이재민 구호, 차량통제, 인명구조, 장비지원.....등 구체적으로 정리				
희망 활동내용	※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				
[특이사항] ※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					

위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가입희망자 ○ ○ ○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[별지 제1-1호 서식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<단체>

등록번호 :

단 체 명			대 표 자	○○○ (휴대전화)	
주 소			대표전화		
담 당 자	○○○ (휴대전화)	부서명			
인 원	남 ○○명	여 ○○명	총인원	○○명	
장 비	장비명(규격) ○○ 대	장비명(규격) ○○ 대	장비명(규격) ○○ 대	장비명(규격) ○○ 대	
지원가능	남 ○○명	장비(규격) ○○대	장비(규격) ○○대	장비(규격) ○○대	
전문분야	※ 단체의 성격 정리 예) 인명구조, 이재민 구호, 장비지원, 차량지원.. 등 구체적으로 정리,				
활동희망분야	※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				
[특이사항] ([별지 제1-2호 서식]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)					

상기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대 표 ○ ○ ○ 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[별지 제1-2호 서식]

[별지 제2호 서식]

활 동 확 인 서

성 명	(인)	등록번호	※서식1의 등록번호
활동내용	사유	※ ○○태풍, ○○지역 집중호우, ○○지역 설해 등	
	방법	※ 인력,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	
	시간	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 부터 ~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 까지 (○○시간)	
	장소	※ ○○면(군)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	
	내용	※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) ○○지역 사전예찰 00시간, ○○마을 차량통제, 00시간 ○○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	
[건의사항] ※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			
확인자 직위 ○○을(면동)대표		성명 (인)	

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※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
※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

[별지 제2-1호서식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<단체>

등록번호 :

단 체 명			대 표 자	○○○ (휴대전화)	
주 소			대표전화		
담 당 자	○○○ (휴대전화)	부서명			
인 원	남 ○○명	여 ○○명	총인원	○○명	
장 비	장비명(규격) ○○ 대	장비명(규격) ○○ 대	장비명(규격) ○○ 대	장비명(규격) ○○ 대	
지원가능	남 ○○명	장비(규격) ○○대	장비(규격) ○○대	장비(규격) ○○대	
전문분야	※ 단체의 성격 정리 예) 인명구조, 이재민 구호, 장비지원, 차량지원.. 등 구체적으로 정리,				
활동희망분야	※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				
[특이사항] ([별지 제2-2호서식]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)					

위 단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대 표 ○ ○ ○ 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[별지 제2-2호서식]

[별지 제3호서식]

활 동 확 인 서

성 명	(인)	등록번호	※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
활동내용	사유	※ ○○태풍, ○○지역 집중호우, ○○지역 설해 등	
	방법	※ 인력,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	
	시간	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 부터 ~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 까지 (○○시간)	
	장소	※ ○○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	
	내용	※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) ○○지역 사전예찰 00시간, ○○마을 차량통제, 00시간 ○○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	
[건의사항] ※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			
확인자 직위 ○○동대표		성명 (인)	

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※ 확인자는 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
※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

[별지 제3호 서식]

단원 활동현황 총괄표

등록번호	성명	활동상황		비고
		횟수	시간	
1				
2				
3				

※ 등록번호

- 개인의 경우는 [별지 제1호 서식]의 등록번호를 기재
- 단체의 경우는 [별지 제1-1호 서식]의 등록번호와 [별지 제1-2호 서식]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[(예) 10-1]

※ 횟수,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

※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 등으로 관리

※ [별지 제2호 서식]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

※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

[별지 제4호서식]

단원 활동현황 총괄표

등록번호	성명	활동상황		비고
		횟수	시간	
1				
2				
3				

※ 등록번호

- 개인의 경우는 [별지 제2호서식]의 등록번호를 기재
- 단체의 경우는 [별지 제2-1호서식]의 등록번호와 [별지 제2-2호서식]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[(예) 10-1]

※ 횟수,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

※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 등으로 관리

※ [별지 제3호서식]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

※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

[별지 제4호 서식]

[별지 제5호 서식]

출 입 증

사진
3×4

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원

5.5cm

지역자율방재단원증

NO. 000 혈액형 O(RH+)형

성명 : 홍길동

주민번호 : 123456-1234567

소속 :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

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

↑ 7.7 cm

안전문화운동 또는 자치단체 마스코트나 로고 마포구청 직인 사용

[별지 제5호서식]

[별지 제6호서식]

출 입 증

사 진
(3×4cm)

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

← 5.5cm →

지역자율방재단원증

NO. 000 혈액형 O(RH+)형

성명 : ○ ○ ○

생년월일 : . . . ()

소속 :

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년 월 일

마포구청장 (인)

↑ 7.7 cm

바탕 배경에 마포구 상징(회장) 삽입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제9조(운영 등) 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, 여비, 유류대 등 필수 경비
2.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, 부상,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. 단,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
3. 제복, 모자,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
4. 단원의 교육·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·여비 등 교육·훈련에 소요되는 비용
5.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
6. 사전예찰 활동 및 재난지역의 현장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
7.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현행 조례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기 운용중이며,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미미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행정국 총무과 임종문
연 락 처	02-3153-8242